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(遮熱)재료로 하여 방호하여야 한다

(12)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,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 게 하여야 한다.

4.2.2 용접 · 용단 작업

- (1) 용접·용단 작업 장소 주변에 인화성,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장소로 부터 수평거리 11m 이상 격리시키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.
- (2) (1)의 격리조치가 어려울 경우 불꽃, 불티의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 덮개, 용접 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.
- (3) 건물 지하층의 천정, 건물 외벽 등 단열재가 설치된 구간과 인접하여 용접 작업을 하는 경우, 해당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(2)항의 조치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
- (4)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, 드럼에 용접·용단 작업을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부득이 용접·용단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용기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이나 화재 위험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실시하여야 한다.
- (5) 가스 용접 작업은 작업 전 접속부 가스누출 여부와 호스의 균열 등으로 인한 가스 누출을 확인하고,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는 역화방지기 부착하고 작동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6) 용접·용단 작업 시 안전보건작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KOSHA GUIDE C-108-2017(건설현장 용접용단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)의 규정에 따른다.

4.2.3 폴리 우레탄 폼(Poly urethane foam) 작업

- (1) 우레탄 폼 작업은 작업 전 가스, 전기용접 등 화기사용 작업을 선행 하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하여 동시 작업을 금지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 - (가) 가스용접과 같은 화기작업을 마친 후에 우레탄 폼 마감작업